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825호
나. 발 의 자 : 김소영 의원(찬성자 18명)
다.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15일
라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
2. 제안이유

○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‘정보접근성’을 ‘정보통신접근성’으로 함(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2020년 6월 9일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김소영 의원(비례, 민생당)이 발의하였음.

나. 관련 입법 현황

○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의 전신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2013년부터 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접근,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재·개정됨에 따라 장애인·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2016년 4월 14일부터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로 제정되어 시행되었음.

- 2019년 7월 18일 동 조례는 같은 해 2월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장애인·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의 범위를 기존 ‘인터넷’에서 ‘정보통신망’으로 확대[1]함에 따라 ‘웹접근성’이라는 용어 대신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‘정보접근성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차례 제명을 변경하였음.

---

1) 동법의 개정에 따라 정보접근대상은 기존 ‘웹사이트’에서 ‘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’로 확대되었음.

○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6월 10일부터 기존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을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개정하고 2017년부터 실시한 “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”을 “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”으로 명명하여 용어가 정리되었음.

- 이에 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과 함께 진행해오던 모바일 앱 접근성 및 소프트웨어 접근성에 대한 인증을 “정보통신접근성”으로 명명하여 인증심사를 진행하고 있음.

다. 개정안 주요내용

○ 개정안은 조례 제명 및 내용의 “정보접근성”을 “정보통신접근성”으로 변경하고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특히 동 조례가 제1조를 통해 “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”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의 “정보통신접근성”과 일치하므로 용어의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○ 다만 기존 “정보접근성”이라는 용어가 “정보통신접근성”이라는 의미로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여전히 통용되고 있고, 정부

기관을 포함한 해당 업계에서는 “정보접근성”이 ‘어떠한 이용 환경에서도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성을 보장하는 것’을 말하는 용어로 사용되고, ‘디지털 정보격차[2] 해소’ 등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유사 단어도 존재하므로 정확한 용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, 서울시를 포함한 서울시 공공기관 내에서도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하겠음.

○ 또한 동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이었으나, 2019년 8월 22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을 관리하는 ‘홈페이지팀’이 직제 개편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이관되어 해당 조례도 소관이 변경된 것임.

○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시민소통기획관 홈페이지팀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을 관리하는 기능만 있을 뿐,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 수립 및 시행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[3]하다고 주장해왔음.

○ 따라서 동 조례의 내용이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에 포함되어 서울시의 주요 정책화하거나 동 조례를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재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○ 한편 동 개정안 제1조 내용 중 “대통령령”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[4]를 뜻하므로 정확한 명기를 위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.

---

2) 정보취약계층 뿐 아니라 세대·남녀 등에 따른 정보격차를 포괄하는 단어임.

3)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추진전략 및 주요업무로 “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”을 설정하고 있음(붙임1 참고)

4) 제34조(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)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“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·무선 정보통신”이란 다음 각 호의 유·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.
1.~4. (생략)
② (생략)

< 안 제1조에 대한 수정의견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--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**대통령령으로** 정하는 유·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--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**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제34조로** 정하는 유·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--.

담당 조사관	임창균 02-2180-8116
전문위원	강 헌 02-2180-8114

붙임1. 스마트도시정책관 정책소개(서울시 공식 홈페이지)

정책목표

연결,융합,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

추진전략 및 주요업무

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

-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(S-Net)
- 스마트서비스 통합제공 표준모델 확산(S-Pole)
- IoT 도시데이터 품질확보 및 활용도 제고(S-Dot)
- 스마트서울 CCTV 운영체계 강화
- 사이버 안전도시 서울 실현(S-Security)
- 정보인프라의 통합구축 및 안정적 운영

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혁신행정 선도

- 포스트코로나 시대,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
- 정보자원의 클라우드 전환으로 탄력적 IT서비스 기반 마련
- 인공지능(AI) 기반 행정서비스 추진
-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(S-Data)
-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혁신 서비스 추진(S-Map)
- 비대면 통계조사 전환, 통계플랫폼 구축

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

-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
- 열린데이터광장 및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
- 스마트도시 공간정보서비스 확산
- 2021 서울서베이 등 통계조사 추진
- 공공예약 서비스 확대 및 시민 편의성 제고
- 신기술 서비스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
- 스마트도시 글로벌 위상강화

추진기반

스마트서울 거버넌스

시민	• 와이파이 모니터링단 • 공공데이터수집단
전문가 · 기업	• 스마트도시위원회 • S-Net 전문가 자문단 • 대·중소기업·스타트업
공공 · 해외도시	• 스마트도시 특구 • 자치구, 중앙정부 • 스마트시티 참여도시

+

스마트서울 플랫폼

플랫폼	기반기술
S-Net (Smart Seoul Network)	초고속통신, WiFi
S-Data (Smart Seoul Data)	빅데이터
S-DoT (Smart Seoul Data of Things)	사물인터넷
S-Brain (Smart Seoul AI)	인공지능
S-Map (Smart Seoul Map)	디지털 트윈
S-Security (Smart Seoul Security)	사이버 보안, CCTV

붙임2.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(시민소통기획관)

의안번호 2825	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	김소영 의원	2021.10.15.	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주요내용	○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 및 내용 중 정보접근성을 정보통신접근성으로 개정하고자 함
추진경과	○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(2021.10.15.)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 ) / 부결( ) / 보류( )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특이사항 없음
대응방안	○ 필요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
상 임 위 처리결과	○
향후계획	○

담당부서	뉴미디어담당관	팀장	류은희(☎2133-6500)	담당	박은미(☎2133-6515)